

2) 휴업과 휴교

가) 휴업

(1) 휴업의 근거: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64조 및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47조

(2) 휴업의 효력: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

(3) 휴업 실시 절차

(가) 관할청의 휴업 명령

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

②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함

(나) 학교장의 휴업 결정

①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, 토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

②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

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·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,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
④ 학교의 장은 제③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①항에 따른 휴업일로 별도 지정해야 함

(4) 교원의 복무

(가)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,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

(나)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, 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

(다) 휴업일에 『교육공무원법』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, 연수의 적합성,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야 함

(라) 복무 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

나) 휴교

(1) 휴교의 근거: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64조

(2) 휴교 명령: 관할청

(3) 휴교 사유

①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

(4) 휴교의 효력: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

(5) 교원의 복무: 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